

하얀 껍질 고운 '겨울숲 귀부인' 자작나무 극한 환경 이겨낸 '인내 상징' 사스래나무

나무이야기

나무칼럼니스트 김광식



어느새 겨울은 물러가고 봄의 바람이 느껴진다. 우리의 일상은 차분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 맑은 하늘 아래 추위를 이겨낸 나무들.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만든다. 봄의 숨결은 차갑고도 부드럽다. 하늘은 푸른 물감을 뿜었다. 파란빛과 하얀 구름이 뒤섞인 곳. 소나무 가지마다 초록의 웃이 보인다. 기지개를 켜며 침묵 속에 숨을 쉰다.

자작나무에 대해 알아본다. 자작나무는 참나무속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다 크면 높이가 대개 20m쯤이고 북부지방 깊은 숲에서 자란다. 나무껍질은 백색이고 얇게 가로로 벗겨지며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 잎은 어긋나게 붙고 세모에 가까운 달걀꼴로 끝이 뾰족하다. 암수 한 그루이고 꽃은 4~5월에 아래쪽으로 드리워지면서 핀다. 원통 모양의 열매도 아래로 드리우면서 달리고 9~10월에 여문다. 자작나무는 나무껍질로 아주 유명하다. 하얗고 윤이 나며 종이처럼 얇게 벗겨진다. 예전엔 이 자작나무 껍질에 불을 붙여 사용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화축(華燭)을 밝힌

다고 하는데 그 화축이 자작나무 껍질이다. 또 껍질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썼다. 신라의 '천마도'도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것이다. 자작나무 목재는 박달나무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단하고 치밀하고 결이 고와서 가구도 만들고 조각도 한다. 게다가 벌레도 거의 잘 먹지 않아서 오래 간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일부도 자작나무가 재료이다.

또한 목재에는 다당체인 자일란이 함유되어 있어 핀란드에서는 자일란을 자일로스로 변환시켜 추출한 뒤 정제 및 환원 과정을 거쳐 자일리톨을 만든다. 자일리톨을 자작나무 설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작나무라는 명칭은 지질이 많아 불에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잘 탄다고 붙여진 의성어 이름이다. 줄기 껍질의 아름다움과 쓰임새로 '나무의 여왕', '겨울숲의 귀부인' 또는 숲의佳人(佳人)이라고도 하며 영국에서는 '숲의 숙녀'라고 부른다. 한방에서는 수피를 '백화피'라고 하는데, 약재로 이용한다. 해열, 해독, 소염의 효능이 있다.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사스래나무다. 자작나무과의 같고 큰 키의 낙엽교목이다. 높이는 7~8m에 이른다. 껍질은 회색갈색으로 얇게 벗겨진다. 자작나무, 사스래나무, 거제수나무는 흰색 계통의 수피와 비슷비슷한 잎 모양으로 인해 구분이 쉽지 않다. 사스래



자작나무



사스래나무

나무는 우리나라 고산지대의 대표적인 나무로 흔히 무리 지어 자란다. 가리왕산 같이 잘 보존된 숲에서는 지름 1m 가까운 거목들도 흔하다. 사스래나무는 고산 환경에 최적화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피는 어린 나무에서는 적갈색을 띠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으로 변하고 종이처럼 얇게 벗겨진다. 이는 추위와 건조로부터 내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줄기는 곧게 뻗은 직립형으로 원뿔형 수관을 이루고 뿌리는 천근성으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필수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와 미생물의 공생관계(균근)를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사스래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것은 극한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생명력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인내와 적응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연의 스승이다. 사스래나무라는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몇 가지 설이 전해진다. 가장 유력한 설은 오래된 수피가 '사스락'

'사스락' 소리를 내며 벗겨지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로는 '사스라이'가 옛말로 '높은 곳'을 의미하며 높은 산에 자라는 나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얇게 벗겨지는 수피는 비상시 불쏘시개나 임시지붕 재료로 활용되었고 혹한의 겨울 산행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수피를 몸에 두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꽃말은 '당신은 소중한입니다'.

추운 겨울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기다림은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꾸벅꾸벅 와서 마음의 불을 켜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들의 삶도 또한 익어가고 떨어집니다. 겨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로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옵니다. 파랗파랗한 봄날이 옵니다. 봄의 새 옷을 입고 싶습니다.

법률상담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Q A씨는 평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모인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B씨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B씨의 현금을 몰래 꺼내 사용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고액의 현금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됐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A씨를 불러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미 다 써서 남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족 간에는 몰래 돈을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A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A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존재하였는데, 최근 가족 형태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① 기존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기존 형법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여 무조건 처벌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에 큰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못 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산 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일률적으로 형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존 형법에 따르면 B씨의 허락 없이 현금을 가져간 A씨는 형을 면제받아 처벌되지 않으나, 개정된 형법에 따라 B씨가 고소하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현우(법률사무소 성을 대표변호사)